

## 2021년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재공고

‘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’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인권단체와 마을공동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들을 생활 속에서부터 인권적 기준과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인권친화마을 만들기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5. 28.

전라북도지사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인권친화마을 만들기
- 사업기간 :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~ 2021. 12. 31.
- 사업비 : 21백만원(도비), 자부담 10% 이상 포함
- 지원규모 : 사업비 내 마을 선정 지원 예정
  -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등의 적정성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
- 사업내용 : 인권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 지원
  - 주민 스스로 ①인권문제를 발굴하고 ②해결방안 논의하여 ③해결하는 사업
    - 마을의 인권문제, 인권취약지역을 발굴 (예) 빈집 등 안전취약지역 발굴
    - 주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 (예) 인권벽화, 인권마을캠프 등
  - 주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활동 등

#### ※ 사업 예시

- 안전취약지역을 인권친화공간으로 전환
  - 빈집 활용한 인권마을 조성(인권주제 벽화, 인권마을책방, 인권마을도서관, 인권사진관 등)
- 아동·청소년 인권독서 마라톤 대회, 인형극, 그림책 UCC, 캠프, 워크숍 등

### 2 신청자격

- 전라북도 내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, 단체 등
-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마을(고유번호증 필수)

### 3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5. 28.(금) ~ 6. 16.(수) / 20일간
- 신청방법 : 직접방문, 우편제출, 이메일(darthvader@korea.kr)
- 접수처 : 전라북도청 인권담당관 / ☎ 063-280-2216  
- (우)54968,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, 전라북도청 인권담당관(공연장동 1층)  
※ 원본서류 및 한글파일 제출 (darthvader@korea.kr)

### 4 제출서류

- 2021년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단체 자기소개서 1부
-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(법인·단체등록증, 고유번호증)
-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(회원명부 포함)  
※ 반드시 첨부된 서식에 한글파일로 작성·제출  
※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하되, 이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#### <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능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>

- ①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② 상근직원 인건비·사무실 임대료·사무용 집기구입·공과금·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
- ③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,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(용역성 경비)
- ④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
※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.

### 5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

-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: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
- 선정기준
  -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인력운용 능력, 기관장 의지 및 수행책임자의 전문성
  -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절성,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
  -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,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, 전년도 평가결과 등
- 심사 : 2021. 6~7월 예정 \* 변동될 수 있음
- 결과통보 : 2021. 7월중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

## 6 보조금 지급, 정산 및 평가

-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“단체 명의”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
  - “단체명의를 보조금전용통장 및 카드(NH농협은행)”, “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”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 계획
  -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“보조금 전용통장(NH농협은행)”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
-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: 단체 ⇒ 인권담당관
- 정산보고 후, 보조금 집행잔액, 정산이자 등 반납처리 실시

## 7 기타사항

-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“보조금결제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” 사용 원칙
-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·공람 및 수정, 추가보완이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은 선정심사 평가자료이므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단체 선정을 취소함
-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의 운영지도·감독 및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사항은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없음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
- 다수의 민간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 도 공모사업 3개까지만 지원 가능함(공익활동지원사업 제외)
- 2021년 지원사업(선정단체 내역, 정산·평가결과 등)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“단체 동의 없이 공개”할 수 있음.